

참가신청서

참가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하신 정보는 각종 온/오프라인 상의 전시참가기업 홍보에 사용되니 정확하게 기재바랍니다.

참가비 납부 및 부스면적 확정

- 참가비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참가비 전액이 납부된 후 부스 면적과 부스 위치가 최종 확정됩니다.
- 참가신청 후 부스 면적을 추가 또는 축소할 경우, 변경 시점의 할인을 또는 정상이격이 적용되며,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는 최소 규정에 적용된 일정에 따라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계약 취소 또는 변경

- 참가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참가자는 주관사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 합니다.
- 납입된 참가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은 환불되지 않으며, 아래의 취소 규정에 따라 취소 위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6일 이전에 신청 취소 또는 부스 면적 축소 변경 시,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2년 5월7일부터 8월6일 이전에 신청 취소 또는 부스 면적 축소 변경 시, 총 참가비의 **75%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2년 8월 7일 이후 신청 취소 또는 부스 면적 축소 변경 시,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참가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sales@cinекoreaexpo.com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정보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회 사 명	(국문)		
	(영문)		
주 소 (도로명)	(국문)		
	(영문)		
홈페이지			
담 당 자	성 명	(국문)	(영문)
	직 위	(국문)	(영문)
	부 서	(국문)	(영문)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세금계산서 수령담당자	(성명)	전 화	(사무실)
	(이메일)		(휴대폰)

참가자 업종 (중복 체크 가능)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제조사	<input type="checkbox"/> 수출업	<input type="checkbox"/> 수입업	<input type="checkbox"/> 소매업	<input type="checkbox"/> 도매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공업	<input type="checkbox"/> 에이전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협회·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전시품 정보

전시품목	<input type="checkbox"/> 촬영 장비·기자재	<input type="checkbox"/> VR·AR·MR·XR	<input type="checkbox"/> VFX·SFX	<input type="checkbox"/> 조명솔루션
	<input type="checkbox"/> 시네마제작·배급	<input type="checkbox"/> 영화관 설비	<input type="checkbox"/> MD·Distribution·Licensing	<input type="checkbox"/> 방역시스템
	<input type="checkbox"/> OTT 서비스 플랫폼	<input type="checkbox"/> 1인 미디어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교육	<input type="checkbox"/> 독립영화·웹툰 & 애니메이션
	<input type="checkbox"/> 음악·음향	<input type="checkbox"/> 로케이션·촬영 세트	<input type="checkbox"/> 모바일·IPTV	<input type="checkbox"/> 지자체·유관기관·협단체·교육 기관·특허법무법인·컨설팅·투자회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 전시품명	(국문)		제조 국가명	
	(영문)		제조 국가명	

부스 신청

부가세 10% 별도

구분	단가	신청수량	합계	비고
독립부스 (A)	2,500,000원 부스당 (9m ²)	부스	원	바닥 면적만 제공 2부스 이상만 신청 가능
스탠다드 조립부스 (B)	2,800,000원 부스당 (9m ²)	부스	원	부스시공, 기본비품 포함
디럭스 조립부스 (C)	3,200,000원 부스당 (9m ²)	부스	원	부스시공, 기본비품 및 추가비품 포함
할인내역 (D)	1차 조기신청 (2022.4.29 한)	부스	원	부스당 30만원 할인
	2차 조기신청 (2022.4.30 ~ 6.30)	부스	원	부스당 15만원 할인
합 계 : (A / B / C) - D			원	

스폰서십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 있습니다.

컨퍼런스 프로그램 안내 바랍니다.

1:1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를 희망합니다.

전기신청

부가세 10% 별도

구분	단가	신청수량	합계	비고
단상 220V/60Hz (A)	70,000원 / kW	kW	원	1kW 기본 제공 전기(220V) 이외 추가 전기 필요 시 신청
삼상 380V/60Hz (B)		kW	원	
24시간용 전기 (C) 220V/380V	80,000원 / kW	kW	원	신청자에 한해 제공
합 계 : (A+B+C)			원	

부대시설 신청

부가세 10% 별도

구분	단가	신청수량	합계	비고
인터넷 (A)	150,000원 / 회선	회선	원	설치비 및 사용료
전화 (B)	70,000원 / 회선	회선	원	
급배수 (C)	250,000원 / 개소	개소	원	
압축공기 (D)	250,000원 / 개소	개소	원	
참관객 바코드 스캐너 (E)	180,000원 / 대	대	원	
합 계 : (A+B+C+D+E)			원	
총 합 계 : (부스 + 부대시설 + 전기신청)			원	

신청 절차



1. 참가신청 전사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sales@cinetoreaexpo.com 이메일 주소로 제출
2. 사무국 접수 승인
3. 인보이스 수령 사무국에서 인보이스 발급
4. 계약금 납부 총 참가비의 50% 선결제 *신청 시 사무국에서 발급된 인보이스 수령 후 7일 이내에 계약금 납부
5. 참가비 잔금 납부 사무국에서 고지한 잔금 납입기한 내 납부

참가비 납부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504-284208	(주)케이엑스비전스

*참가비는 회사명으로 입금 부탁드리며, 개인명으로 입금하실 경우 사무국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51-714-6068)

CINE KOREA EXPO 2022 참가규정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표제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케이엑스비즈니스와 참가기업간 이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시회'라 함은 (주)케이엑스비즈니스 (이하 "회사"라 칭한다)가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특정한 장소에서 참가자는 전시품을 출품하고, 참관객을 대상으로 판매·홍보·교육·교류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 '참가자'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회사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득한 기업, 개인,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을 의미하며, '참관객'이란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전시회의 부대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시장에 방문한 관람객을 의미한다.
- '전시품'이란 참가자가 홍보·판매를 목적으로 전시장에 출품하는 모든 유·무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참가비'란 참가자가 신청한 전시참가신청서에 따라 회사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총액을 의미한다.
- '참가신청서'라 함은 회사가 정한 방식 (서면)으로 참가자가 신청한 서비스 세부 내역으로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의미한다.
- '전시장'이라 함은 회사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실내·외 및 지붕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참가자 또는 참관객이 장치기간 시작일로부터 철거기간 종료일자까지 이용하는 전용 및 공용 공간을 의미한다.
- '전시부스'란 참가자가 전시장 내에서 전시품을 홍보·판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전용공간을 의미한다
- '장치기간 (철거기간)'이란 전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시부스 및 창고 등의 공간을 설치 및 준비하는 기간, '전시기간'이란 참관객이 전시장에 방문하여 전시회를 관람하는 기간, '철거기간'은 관람기간이 종료된 후 출품 잔여물 및 설치물 등을 철거하는 기간을 뜻한다.

제3조 (전시회 및 참가자)

- 전시회의 명칭·기간·행사장소 등의 세부사항은 참가신청서에 기재한다.
-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참가자와 실제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자 및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참가신청 및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1: 참가자는 회사가 정한 방식 (서면 등)으로 전시회 참가를 위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은 체결된다.
- 계약 체결 2: 회사는 참가자가 제출한 참가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세부내역을 수정하여 참가자에게 참가신청서 확정을 회신하고, 참가자가 이를 승인하면 계약은 체결된다.

제5조 (계약 변경 및 해지)

- 계약의 변경: 참가자는 전시회 개최 30일 전까지 참가신청계약 세부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전시회 운영상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참가신청취소 (계약의 해지): 참가자가 전시참가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참가신청취소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참가비 납부 및 납부기한)

- 참가비: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세부내역의 합산총액을 의미한다.
- 참가비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다 (선납 원칙).

참가비 총액의 50%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참가비 총액의 100%	사무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 참가비 후납: 참가자가 전시회 종료 후 참가비를 후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서울보증보험 등의 "이행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이행증서 등 (이하 이행증서 등이라고 한다)을 발급을 신청하고, 장치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동 이행증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비 납부기한은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30일로 한다.
- 전항의 이행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비 총액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만약 참가비의 일부를 이행증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한 내 참가비 (또는 이행증서)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참가신청취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미납이 있는 상태에서 전시회에 참가한 경우 회사는 참가비 완납시까지 전시품 철거 (반출)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위약금)

- 참가자가 납부기한 내 참가비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참가신청취소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기 납부한 참가비 전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참가자가 참가신청취소 (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은 아래와 같다.

기한	위약금
2022년 5월6일 이전에 참가 신청 취소 또는 부스 축소 변경 시	총 참가비의 50%
2022년 5월7일부터 8월6일 이전에 참가 신청 취소 또는 부스 축소 변경 시	총 참가비의 75%
2022년 8월7일 이후 참가 신청 취소 또는 부스 축소 변경 시	총 참가비의 100%

- 위약금은 참가신청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즉시 이행증서 등의 실형을 통하여 위약금을 총당할 수 있다.
-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기 납부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전시부스 배정 등)

- 회사는 전시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전시부스 등 참가자 전용공간의 위치·규모·장치물의 형태 등을 결정하고,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참가기업매뉴얼을 확정하여 통지한다.
- 참가자에게 전용공간이 배정 및 운영규정이 통지된 이후라도 전시회 운영상의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효율적인 전시회 운영을 위하여 전시부스의 규모·위치·장치물 등 세부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 참가자는 전시회 참가의 목적을 현저하게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회사의 운영 규정 변경을 수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전시품 출품 및 관리 등)

- 출품 제한: 회사는 전시품이 아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
 - 참가신청서에 사전 신고 내지 출품이 승인되지 않은 물품(용역)
 - 전시 운영상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거나, 전시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물품 (용역)
 - 상표권의 침해 등 법률상의 제한, 인허가의 흠결 등의 사유로 판매·홍보가 부적합한 물품 (용역)
 - 다른 참가자와의 분쟁, 참관객 민원, 혐오 유발 등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회사는 전시기간 중 전항 각호의 사유로 참가자에게 전시품의 반출(퇴거)을 요청할 수 있고, 참가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

3. 참가자는 전시기간 중에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전용공간 내 전시품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시품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안전·보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출품된 전시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나, 회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전시품 도난·분실·망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하자 및 이행 등의 책임)

1. 전시품의 하자 책임, 제조물 책임 및 참가자의 전시품과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 등은 참가자가 피해자와 직접 분쟁을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동 분쟁의 해결하거나 중재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장에서 참가자가 참관객에게 제공 (배포·판매·대여 등)한 물품·용역에 대하여 회사는 정산·배송·반품·취소를 포함하여 일체의 상행위에 대한 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장치기간 (설치기간)'이란 전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시부스 및 창고 등의 공간을 설치 및 준비하는 기간, '전시기간'이란 참관객이 전시장에 방문하여 전시회를 관람하는 기간, '철거기간'은 관람기간이 종료된 후 출품 잔여물 및 설치물 등을 철거하는 기간을 뜻한다.

제11조 (전시부스 양도금지)

1. 참가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자신에게 지정된 전용공간 (전부 또는 일부)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참가자가 모회사·자회사·지사·대리점 등 관계회사와 함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전시공간을 양도하되, 이 경우에도 관계회사 명의의 전시참가신청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참가자가 신청서에 기재된 참가자 명의 (업체명, 브랜드 등)가 아닌 제3자의 전시품·홍보물 등을 전용공간에 비치할 경우 간접적인 전시부스 양도행위로 간주되며, 회사는 해당 물품을 반출시키거나 또는 참가비의 환불 없이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

제12조 (시설물 및 안전관리)

1. 참가자는 장치기간,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에 참가자의 전용공간 및 참가자가 점유하는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참가자는 회사 또는 전시장 대여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전시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시설물을 이용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진다.
3. 시설물의 변경·훼손에 대한 참가자의 원상회복이 지연되거나 복구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참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참가자의 시설물 (장치물) 및 모든 전시품은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소방조치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세부운영규정)

1.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철거, 부대시설, 음향설비, 주차, 홍보행사 등 세부운영규정은 전시회 장치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방식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2. 동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전항의 '세부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참가자는 동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참가자가 전항의 세부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전시회 운영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전시회 참가를 제한하거나, 참가비 반환 없이 참가자의 전시부스를 철거시킬 수 있다.

제14조 (추가비용)

1. 제12조의 세부운영규정이 정하는 기간 (장치기간, 전시기간, 철거기간 등)과 운영시간을 초과하여 전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참가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추가비용은 전시회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 전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유리규정)

1. 참가자는 전시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참가비 및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동 계약에서 정하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추가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직원 또는 제3자에게 납부하거나 전시회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참가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자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내역에 근거하여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 2개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의 목인, 금품수수, 향응·편의제공 등의 불법행위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배임 중·수재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6조 (정보보호)

1. 참관객으로부터 적법하게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득하지 않는 한, 회사는 전시회 관람을 위해 방문한 참관객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참가자의 전용공간에 방문하였거나, 참가자가 직접 요청한 관람객인 경우에도 전항의 정보제공동의를 얻지 않는 한 회사는 참가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정보 수집 및 사용)

1. 참가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는 전시회 진행 및 추후 있을 전시회와 전시회 관련 서비스 안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참가신청서 상에 기재된 담당자의 연락처가 주요 연락처로 사용된다.
2. 회사 및 전시장 운영자를 포함한 전시회 관련 제삼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3. 수집된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거나 주요 연락처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 marketing@cinetoreaexpo.com로 문의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회사와 참가자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및 쌍방의 권리 의무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